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2019.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44호
- 나. 발 의 자 : 백 승 권 의원
- 다. 제출일자 : 2019. 11. 15.(금)
- 라. 회부일자 : 2019. 11. 15.(금)

2. 제안이유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안 제3조)
- 나.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6조)
- 다. 공익활동 내용 및 경비지원 사항(안 제8~9조)
- 라. 공익활동지원 사업 지도 및 감독기준을 규정(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 11. 15.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음.

○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공익활동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공익활동 내용 및 경비지원 사항을

안 제10조 공익활동 지도 및 감독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와 제4조의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4년 12월 1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현재 따르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금천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원 단체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공익활동 단체를 위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공익활동범위를 안 제8조에 명시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공익활동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공익활동단체에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1)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보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
-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제32조의2 제2항²⁾에 따라 운영비로써 지원은
제한된다고 판단되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절차에 맞게 지원하고,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일반 주민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을 결정시에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참고사항으로 본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강동구, 노원구 등 2개구
서울 외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공주시, 광산구, 구리시, 대구광역시, 부산 동구, 순천시, 아산시, 제주도, 충청남도 등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음.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1부. 끝.

2)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약칭: 비영리단체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붙임2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연도	서울시 소재			전국(B)	전국 대비 서울시 소재단체(A÷B) (%)
	서울시 등록단체 수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수	합계(A)		
2012	1,404	1,087	2,491	10,860	22.9
2009	1,052	829	1,881	9,003	20.9
2006	788	637	1,425	6,490	22.0
2003	533	444	977	4,738	20.6
2000	234	278	512	2,620	19.5

○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현황

분 야	서울시	분 야	서울시
총 계	2,491	환경·생태	334
복지·건강	413	경 제	157
문화·관광	318	교 통	71
아동·여성	344	기 타	854

○ 상근 활동가 현황 : 5명 미만의 소규모 단체가 다수(61.2%)임.

실무자 수	응답 단체수	1~4명	5~9명	10~49명	50~99명	100명 이상
단체 수	1,083	663	260	136	18	6
비율	100%	61.2%	24.0%	12.6%	1.7%	0.5%